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2528 | [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 |
|----------|------|---|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8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에 따른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 업무 조정사항 반영(안 제12조제5항)
(현행) 예산계장 → (개정)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- 불필요한 조문 삭제
 - 제17조(시행규칙) 삭제

다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 제1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가. 검토사항

- 제정배경

- 주민참여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 제10조 현행 기준에 근거하여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내용검토

- 위원회 운영(안 제12조)
 - 제5항 기존 ‘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’ 를 ‘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’ 로 현 업무에 맞게 개정
-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 제10조 현행 기준에 근거하여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 조례 제12조제5항 간사를 기존 ‘예산계장’ 에서 ‘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’ 으로 개정하는 내용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

제10조(부서의 분장사무)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

본청 실·과 사무분장표(제10조 관련)

| 부 서 명 | 분 장 사 무 |
|-------|---|
| 자치행정과 | 1. 동 행정 지도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.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3. 자치분권 사무 4.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.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6. 구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. 민간단체관리 및 자치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8. 견문보고제에 관한 사항 9. 척척 중구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.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 11. 주민등록 등본·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. 민원사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.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4.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5.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6.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|